대전광역시 대덕구

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관(부서)의 장
람	

	Н
5	

http://www.daedeok.go.kr

제2023-68호 2023. 11. 17.(금)

차 례

훈 령(1)

•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(훈령 제493호) 1

고 시(1)

•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(고시 제2023-115호)

공 고(5)

-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(공고 제2023-1165호) 5
-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(청문) 공시송달 공고(공고 제2023-1174호) 7
-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(청문) 공시송달 공고(공고 제2023-1183호) …………… 10
- 도시계획시설사업[연구시설] 공사완료 공고(공고 제2023-1189호)1

입법예고(1)

•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공고 제2023-1173호) · · 13

곳					
₽L					
딤					
	 	- -	 	 	

발행: 대전광역시 대덕구 / 편집: 기획홍보실(우: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(오정동) 🕫 608-6602)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 에 발령한다.

2023년 11월 17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 규

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93호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4호 중 "셋째자녀"를 "둘째자녀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결혼축하포인트: 당해연도에 결혼을 한 공무원에게 100점을 배정한다. 다만, 재직중 1회에 한하며, 부부공무원의 경우 1인에게만 배정한다.
- 6. 출산축하포인트: 출산을 한 공무원에게 매 출산시 100점을 배정한다. 다만,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1인에게만 배정한다.

제11조제5항 중 "가산되지"를 "가산하지"로 하고,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결혼·출산축하포인트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로 부여하며 신청기한 은 혼인·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결혼축하포인트 및 출산축하포인트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 규정은 2024. 1. 1. 이후 발생한 사항부터 적용한다.

- <개정이유 및 주요내용> -

□ 개정이유

정부의 저출산 해소 정책 방향에 대응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 작하기 위하여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고 결혼·출산축하포인트를 신설하는 등 복지포인트 배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다자녀포인트 배정기준을 변경함(제10조제1항제4호).
 - 다자녀포인트 100점을 셋째자녀에서 둘째자녀 이후로 완화 배 정함.
- 나. 결혼축하포인트를 신설함(제10조제1항제5호).
 -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100점 배정하며, 부부공무원의 경우 1인에 게만 배정함.
- 나. 출산축하포인트를 신설함(제10조제1항제6호).
- 매 출산시 100점 배정하며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1인에게만 배정함.
- 라. 결혼·출산축하포인트 부여 기준일을 정함(제11조제5항).
 - 결혼·출산축하포인트는 사유 발생시 추가 배정하며 신청기한 은 혼인·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.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3-115호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1월 17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부여

지	번 주 소	도 로 명 주 소	부여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 여 사 유	도로명 부여시유 (도로명 고시일)
상서동	· 324-15	새말1길 23	2023. 11. 17.	건물신축	옛 지명(새말) 명칭 반영

- 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(☎042-608-5305)로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(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) (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- ❖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,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 끝.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-1165호

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

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75-43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, 「건축법」 제45조(도로의 지정·폐지 또는 변경)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7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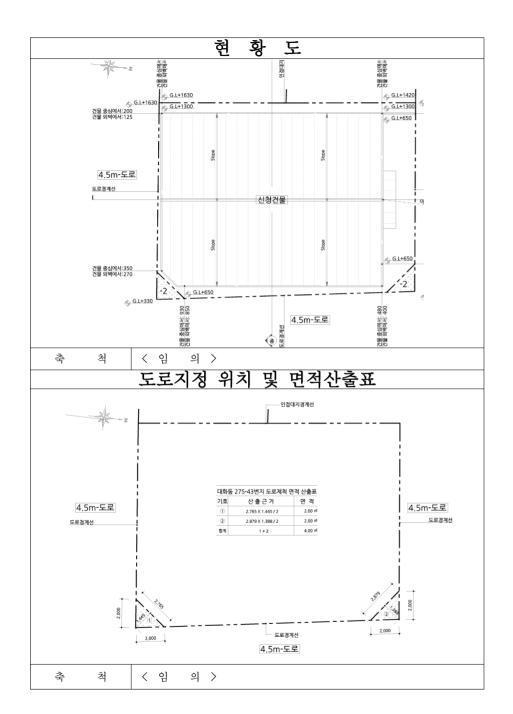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공고하는 사항

위 치	지적면적	편입면적	소유자	이해관계인 동 의 여 부	비고
대화동 275- 43번지	4 m²	4m² 전0호		동의	

2. 기 타

위 사항에 대한 관련 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(☎042-608-5152)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-1174호

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(청문) 공시송달 공고

「식품위생법」제37조(영업허가 등)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(말소)에 따른 영업자의 「식품위생법」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3년 11월 17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- 1. 공고기간: 2023. 11. 17. ~ 2023. 12. 1. (15일간)
- 2. 근거법규: 「식품위생법」제37조제4항, 제37조제7항
- 3. 행정처분(직권말소) 공고내용
 - 가. 처분의 제목: 「식품위생법」위반업소 직권말소
 - 나. 대상업소: 대덕구 중리로76번길 12 (중리동) / 셀렌포크 (최〇규)
 - 다.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: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
 - 셀렌포크 (사업자등록 폐업일 2015. 12. 31.)

4. 고지사항

- 「행정절차법」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1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.
- 5. 본 처분에 대한 문의: 위생과 식품유통팀 ☎(042)608 6964. 끝.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-1175호

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

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36-6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, 「건축법」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5조(도로의 지정·폐지 또는 변경)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7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제 목 : 건축법 상 도로지정 공고

2. 지정근거 :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

3. 공고기간 : 2023. 11. 17.~ 2023. 12. 2.(15일간)

4. 공고대상

소재지	지적 (m²)	편입 면적 (㎡)	지목	소 유 주 소	자	성 명	이 해 관계인 동의여부
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36-6번지	992	33	답	주소생략		김**	동의
	계	33					

5. 공고방법 :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

6.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대덕구청 건축 과로 의견(서면)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건축과 건 축허가팀(☎042-608-515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-1183호

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(청문) 공시송달 공고

「식품위생법」제37조(영업허가 등)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(말소)에 따른 영업자의 「식품위생법」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3년 11월 17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- 1. 공고기간: 2023. 11. 17. ~ 2023. 12. 1.(15일간)
- 2. 근거법규: 「식품위생법」제37조제4항, 제37조제7항
- 3. 행정처분(직권말소) 공고내용
 - 가. 처분의 제목: 「식품위생법」위반업소 직권말소
- 나. 대상업소: 우리네식당 (전0단) / 대전 대덕구 오정로42번길 79, 2층 (오정동)
- 다.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: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
- 우리네식당(사업자등록 폐업일 2012. 4. 10.)
- 4. 고지사항
 - 「행정절차법」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1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.
- 5. 본 처분에 대한 문의: 위생과 위생관리팀 ☎(042)608 6902. 끝.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-1189호

도시계획시설사업(연구시설) 공사완료 공고

- 1. 국방기술품질원장이 대덕구 고시 제2022-20(2022.3.25.)호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한 광학전자부품 시험동 건립공사 사업이 완료되어,
-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.
- 3. 관계도서는 대덕구 도시계획과(☎042-608-5102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23년 11월 17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- 1. 사업시행지의 위치
 -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842번지 일원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1). 종류 : 도시계획시설사업(공공문화체육시설/연구시설)
 - 2). 명칭 : 광학전자부품 시험동 건립공사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1). 성명 : 국방기술품질원
- 2). 주소 :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(충무공동)

4. 사업의 면적 및 규모

1). 면적 : 97,043.6 m²

2). 사업의 규모

· 토지이용계획

구분	대지면적	건축부지	도로 및 주차장	광장부지	조경부지	자연녹지	비고
	97,043.6	4,141.60	6,378.76	2,843.02	14,302.27	69,377.95	

· 건축물 건축

	구분	기 존	금회공사분	합 계	
건	건축면적	3,029.25 m²	1,112.35m²	4,141.60 m²	
	연면적	10,134.67m²	1,622.42 m²	11,757.09m²	
축	용적률 산정용면적	7,489.86m²	1,105.14m²	8,595.00 m²	
	건폐율	3.12%	1.15%	4.27%	법정:20%이하
 규	용적률	7.72%	1.14%	8.86%	법정:80%이하
,,	규모	지하1층/ 지상5층	지하1층/ 지상1층		
모	구조	철근콘크리트조/ 철골조	철근 콘크리트조		
	최고높이	22.60m	8.50m		
주차대수		103대 (장애인전용 포함)	5대	108대	

5. 사업 시행기간 : 인가고시일. ~ 2023. 11. 30.

6. 관계도서 : 게재생략. 끝.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-1173호

「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
「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「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」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7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- 1. 자치법규명 :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2.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

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하여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재량위임한 세부 허가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완화된 규제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세부허가기준 중 일부를 완화하여 변경함(안 별표).
 -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의 부지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의 기준(4m 이상)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완화함.
- 나.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(별표 1)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·충 전사업자 영업소의 허가기준(별표 2)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으로 통합하여 정비함(안 별표).

4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(참조 : 에너지산업 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,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· 주소 · 전화번호
- 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 34443 /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(오 정동)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에너지산업과(전화 : 042-608-6933,

FAX: 042-608-3837, E-mail: lina2014@korea.kr)

라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이메일, 직접방문 등

5. 그 밖의 사항

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산업과 담당자 (전화 : 042-608-6933)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"를 "별표"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2를 삭제하고,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전에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(제3조 관련)

구 분	세 부 기 준	비고
	1. 설치지역	
	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거지역,	
	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	
	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.	
	2. 시설기준	
액화석유가스	○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	
충전사업	및 사업법 시행규칙」별표 4제1호가목1)가)에서 정한	
	기준의 2배로 한다.	
	○ 차량 진·출입로가 접한 사업소 부지의 그 한 면이 폭	
	16미터 이상인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도로는	
	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로 허가신청일 현재 개설되어	
	있는 도로를 말한다.	
	1. 설치지역	
	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거지역,	
액화석유가스	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	
· 충전사업자의	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.	
영업소	2. 시설기준	
0 8-2	○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	
	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도로는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로	
	허가신청일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. 1. 설치지역	
액화석유가스		
	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거지역,	
판매사업	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	
	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.	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허가기준 등) 법 제5조제5	제3조(허가기준 등)
항·제7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	
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	
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<u>다음 각</u>	
<u>호</u> 와 같다.	
1.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	<u><</u> 삭 제>
<u>가기준: 별표 1</u>	
2.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·충	<u><삭 제></u>
전사업자 영업소의 허가기준:	
<u>별표 2</u>	

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	자치	법규	명	:	대전광역시	대덕구	액화석유가스사업	허가기준에
			관측	한-	조례 일부개	정조례안		
\subset) 성		명	:				
) 생	년 월	일	:				
\subset) 주		소	:				
\subset) 연	락	처	:				
$\overline{}$) 의		겭	:				

내 용	의	견	비고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